

이슈브리프 880호
(2026. 8.11)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상시화·장기화 : 미 강제노동 관세(301조) 조치의 본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880호

김경숙 kgs0717@inss.re.kr
홍건식 hks21c@inss.re.kr



국문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상시화·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면서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과 합산해 총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하는 'net of MFN'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관세에 12.5%를 일률적으로 더하는 구조가 아니며, 품목별 기존 세율과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단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관세법 제338조 등 대통령이 활용 가능한 모든 관세 권한을 총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강제노동과 인권, 원산지, 공급망 투명성이 새로운 통상 기준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효율성 기반의 국제 통상질서에 신뢰와 가치 규범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된 복합 통상질서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은 품목별 실효관세를 정밀 분석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내 투자 고용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방정부뿐 아니라 의회·주정부·노동계와의 다층적 통상외교 및 상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잉 생산' 조사의 결과와 관세법 제338조 조치가 캐나다를 넘어 다른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수출 제도와 관련 관행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강제노동, 과잉생산, 총관세율 12.5%, 관세의 상시화, 대미 통상외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상시화·장기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종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총관세율을 적용받는 별도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비면제 품목에는 기존 관세와 이번 301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원칙적으로 12.5%가 되도록 조정하는 이른바 ‘MFN 세율 차감 방식(net of MFN rate)’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관세에 12.5%포인트를 일률적으로 얹는 방식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기존 적용 관세율이 0%인 품목에는 12.5%의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만, 기존 관세율이 8%인 품목에는 4.5%만 추가된다. 기존 세율이 이미 12.5% 이상이라면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 영국, EU, 대만, 일본 등과 달리 ‘국가별 추가 면제 목록’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일시 부과했던 상호관세의 법정 시한 만료 시점(7월 24일)에 맞춰 단행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의 통제를 우회해 상시적인 보편 관세 방향으로 관세 체계를 재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관세 부과의 명분이 전통적인 무역적자나 관세율 격차 해소를 넘어 차별 대우, 강제노동, 인권, 공급망 관리와 같은 가치 규범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향후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과잉생산 등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별 추가 면제국에서 제외된 한국은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 USTR의 무역법 301조 조치 내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USTR는 2026년 3월 12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 (16개 경제권) 및 ‘강제노동’ (60개 경제권) 실태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USTR는 외국의 제도 미비로 강제노동 제품이 유통되면 정상적인 노동 기준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아 미국의 상거래가 제한된다고 보았다.

조사 결과,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차단에 미흡해 미국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5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충분히 도입하지 않았고, 캐나다·에콰도르·EU·인도네시아·멕시코·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은 관련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24일부터 발효된 최종 관세 조치는 크게 세 범주로 나뉜다. 첫째,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를 부분 운영하거나 도입을 약속한 18개 경제권에는 원칙적으로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둘째, 한국·일본·스위스에는 총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조정하는 ‘목표 총관세율 방식’이 적용되며, EU와 대만에는 별도의 10% 기준이 적용된다. 셋째, 그 외 나머지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일괄 부과된다.

특히 한국에 적용되는 ‘12.5% net of MFN’ 방식은 기존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부족분을 채워 부과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실제 추가 부담은 품목별 기존 MFN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12.5%의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지만, 기존 세율이 높은 제품은 추가 부담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품목별 희비도 엇갈린다.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 품목이나 공급이 부족한 필수 원자재는 예외 목록에 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계, 화학, 섬유·의류 등 일반 제조업 제품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대미 수출가격과 공급계약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제 국가 평균치에 기반한 낙관론은 통하지 않는다. 개별 품목의 세부 관세 코드와 한미 FTA 지위, 수입 계약상의 관세 부담 주체 등을 뜯어 보는 ‘품목별 실효 관세율 분석’이 생존의 열쇠이다. 여기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까지 더해질 경우,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총관세율 15% 상한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강제노동이라는 명분과 인권·원산지 기준의 부상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관세 부과 근거를 무역적자나 상대국의 높은 관세율이 아니라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인권·노동 의제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국가별 강제노동 실태와 실제 위험 수준을 정밀하게 반영하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사를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경제권과 낮은 경제권 사이의 관세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의 경제적 목적과 별개로, ‘강제노동’이라는 기준이 공식적인 무역법 301조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강제노동 근절은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 쉬운 의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이를 명분으로 도입된 조치를 단순히 철회하기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다.

다만 정치적 철회의 어려움과 법적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외국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미비가 미국 상거래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광범위한 국가별 관세가 문제 해결의 수준에 비례하는지,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양립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싼 법적·통상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의 통상 규제가 최종 제품의 형식적인 원산지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생산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일지라도 원재료나 중간재가 강제노동 위험 지역이나 공급업체에서 조달되었다면 미국 세관의 검증이나 수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원산지 증명서만으로는 통관이 어렵고, 원재료의 채굴 및 생산 단계, 중간재 제조업체, 노동자의 고용 방식과 임금 지급, 하도급 관계까지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공급망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 자체의 인권 실사 역량을 키우는 것이 미국 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통관을 위한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것이다.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 효율성에 신뢰성과 가치가 더해지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무역질서는 비교우위와 비용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기업들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 공장과 공급업체를 배치했고, 복잡하게 분업화된 글로벌 공급망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교역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전쟁과 핵심광물과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을 거치면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경제안보가 새로운 정책 목표로 부상했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단순히 가장 저렴한 공급처를 선택하기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전략적 경쟁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지, 나아가 노동·환경·인권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번 미국의 강제노동 301조 조치는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은 노동권과 인권 기준을 시장 접근 조건과 결부함으로써, 미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국가와 기업에 자국이 설정한 공급망 규범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 통상질서가 효율성에서 신뢰성으로 완벽히 전환되었다기보다, 기존의 ‘비용 효율성’에 안보·복원력·동맹관계·가치 규범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의 효율성 기반 위에 신뢰와 가치 규범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된 복합 통상질서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기회와 부담을 동시에 안겨준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광범위한 해외 공급망을 활용하고 있어 원재료와 중간재의 원산지 및 노동환경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 노출될 수 있다. 새로운 통상질서에서 경쟁력은 더 이상 제품의 가격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공급망을 얼마나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노동·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위기 시에도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 상대국으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얻고 있는지가 시장 접근의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과제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와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로 통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익 관점에서의 철저한 대응이 시급하다.

첫째, 노동·인권·원산지 실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도가 강제노동 생산품을 충분히 차단하고 있다는 서면 설명에 그치지 말고, 통관 단계의 집행 수단과 고위험 품목 선별 검사, 수입업자의 입증 책임 등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 기업 또한 2·3차 협력업체까지 아우르는 공급망 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태양광, 섬유, 광물, 배터리 원료 등 위험 품목은 선적 단위 거래 자료와 임금 지급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산업별·품목별 실효 관세 분석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 단위의 평균치만으로는 실제 기업의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분류번호(HS Code)를 기준으로 기존 관세, FTA 세율, 301조 추가분, 232조 연동 여부를 결합한 ‘품목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세 집중 제품과 수출 다변화 품목을 식별해야 한다. 특히 자체 분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관세 계산, 예외 신청, 계약 재협상을 지원하는 통합 창구가 절실하다.

셋째, 노동집약 산업의 생산성과 공급망 투명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개선은 생산성을 높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줄여주지만, 이를 인권 문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기술 도입은 협력업체 관리, 근로조건 개선, 원재료 추적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산업 고도화와 인권 실사가 병행될 때, 비로소 기술 투자가 공급망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기존 한미 통상 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미국 내 기여의 가시화가 필요하다. ‘과잉 공급’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기존 합의인 ‘15% 관세 상한선’ 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세·투자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단순한 총액이 아닌 지역별 고용, 협력사 구매, 세수, 노조 협력 등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세분화해 설명해야 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국내 정치와 밀접하므로, 실질적 이익을 증명할수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예외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다섯째, 대미 통상외교를 다층적인 협력 구조로 확대해야 한다. 백악관과 USTR 등 연방 행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방 상·하원, 주정부, 노동계, 싱크탱크를 아우르는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의 주지사, 의원, 노동조합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이 한국의 투자를 지역의 핵심 이해관계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간 협상이 난항을 겪을수록 미국 내부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다층외교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여섯째, 미국 통상법에 대한 상시 조기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카드로 사법부의 통제를 우회하는 새 관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강제 노동을 넘어 산업 보조금, 공급과잉, 디지털·플랫폼 규제, 환경 기준 등이 새로운 301조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민·관·학 합동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해 관보와 청원 동향을 지속 분석하고, 공식 조사 개시 전부터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과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공급망·인권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제조, 블록체인 이력관리,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투명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단순 자동화 대체가 아닌, 노동권을 보호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상생 모델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공급망 구축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6년 7월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 가입 공식화와 싱가포르 등과 양자 FTA 확대처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신통상 규범 정립을 주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통상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통상조치의 경제적 영향과 법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대응해야 한다. 동맹 관계를 고려해 불합리한 조치를 무조건 수용해서도 안 되며, 반대로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려 한미 관계 전체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기존 합의와 국제규범,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기여도, 개별 산업의 피해 규모를 논거로 삼아 예외와 유예를 확보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이 K-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선도하는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 거듭난다면, 이번 조치는 통상 장벽을 넘어 우리 산업과 외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